

사우디 증권감독청(CMA), 상장기업 중 대규모 부실기업 관리제도 시행

2014. 6. 30

사우디아라비아 주재원

- 사우디 증권감독청(Capital Market Authority, CMA)는 금년 7월부터 상장기업 투자자 보호를 위해, 상장기업 중 누적손실이 자기자본 대비 50% 이상인 대규모 부실기업 관리제도를 시행할 계획임.
- CMA는 상장기업 중 자기자본 대비 누적손실률이 50% 이상인 부실기업을 아래와 같이 3개 범주로 나누어 관리함.

[Category 1]

- (대상) 자기자본 대비 누적손실률 50% 이상 75% 미만 기업
- 누적손실률이 50% 이상 도달시 총 누적손실, 자기자본 대비 비율, 적자발생원인 등을 즉시 증권거래소(Tadawul)에 공시
- 회사측이 손실발생 공시하면 Tadawul은 증권시장 개장 후 2시간 동안 거래 정지 및 상장주식명에 별도 표시 추가 (누적손실이 50% 미만으로 축소시 해제)
- 대상기업은 매월 재무보고서를 발표하여야 하며,
- 누적손실률이 자기자본 대비 50% 미만으로 하락시 CMA 앞 외부감사보고서 제출 및 Tadawul 공시

[Category 2]

- (대상) 자기자본 대비 누적손실률 75% 이상 100% 미만 기업
- 누적손실이 75% 이상 도달시 총 누적손실, 자기자본 대비 비율, 적자발생원인 등을 즉시 Tadawul에 공시

- 회사측의 손실발생 공시 후 증권시장에서 1일간 거래 정지 및 상장주식명에 Category 1과 다른 별도의 표시 추가
- 90일내 정상화방안 공시 및 동 방안 점검위원회(3인 이상) 구성, 매분기 정상화방안 이행실태 공시
- 매월 재무보고서 제출,
- 90일내 정상화방안을 마련하지 않거나 매분기 이행실태 공시하지 않는 경우, 30일간 장외시장 거래 후 상장폐지

[Category 3]

- (대상) 자기자본 대비 누적손실률 100% 이상 기업
- 누적손실률이 100% 이상 도달시 즉시 총 누적손실, 자기자본 대비 비율, 적자발생원인 등을 즉시 Tadawul에 공시
- 장외시장 거래로 이전 및 90일내 정상화방안 마련 및 동 방안 점검위원회(3인 이상) 구성, 분기별 정상화방안 이행실태 공시
- 월별 재무보고서 제출,
- 90일내 정상화방안을 마련하지 않거나, 2차년도에 영업이익 발생, 정(+)의 영업활동현금흐름 발생 및 누적손실률 75% 미만으로 축소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0일간 장외시장 거래후 상장폐지

□ 한편, Category 1~3 해당 기업으로서, 누적손실률이 50% 이상에 도달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거나, 50% 미만으로 감축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모든 기업은 동 사실을 공시할때까지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됨. 끝.